

예 천 군



군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제1481호 2023. 10. 26.(목)

선 람	기 관 의 장

고 시

○갈구2리 농어촌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시행계획 고시(예천군 고시 제2023-150호)

○재해위험저수지 지정 해제 고시(예천군 고시 제2023-151호)

공 고

○예천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예천군 공고 제2023-1347호)

○예천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예천군 공고 제2023-1348호)

○예천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예천군 공고 제2023-1349호)

○예천군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예천군 공고 제2023-1350호)

회 람									
--------	--	--	--	--	--	--	--	--	--

발 행 예천군 편찬 홍보소통담당관(전화 650-6065)

갈구2리 농어촌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시행계획 고시

갈구2리 농어촌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시행계획에 대하여 「농어촌정비법」 제59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8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3. 10. 26.

예 천 군 수

1. 사업의 명칭 : 갈구2리 농어촌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2. 사업의 목적

- 갈구2리 농어촌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을 시행하여 노후 주택 정비, 안전·위생 확보, 기초생활인프라, 주민공동시설 및 경관시설 정비 등을 통한 주민들이 안전하고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마을을 만들고자 함

3. 위 치 : 예천군 예천읍 갈구2리 일원

4. 사 업 비 : 1,540.2백만원(국비 1,116, 지방비 389, 자부담 35.2)

5. 주요 사업내용

- 노후주택 정비 : 슬레이트지붕 철거 및 개량, 빈집 철거, 노후 집수리
- 기초생활인프라 : 마을 안길 정비, 위험구간 안전휰스 설치, 배수로 정비, 재래식화장실 개량
- 주민 공동 시설 : 마을회관 리모델링, 문화마당 조성
- 경관시설 정비 : 노후 담장 정비, 슬레이트 창고 철거
- 휴먼케어 및 주민역량 강화

6. 사업시행자 : 예천군수

7. 사업시행기간 : 2021년 ~ 2024년(4년간)

재해위험저수지 지정 해제 고시

「저수지·댐의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에 관한법률」 제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9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재해위험저수지 지정 해제 하였음을 고시합니다.

2023년 10월 26일

예 천 군 수

- 내 용 -

대 상 시 설							지 정 해 사 제 유	비 고
시설(지역)명	소 재 지	소 유 자 (관리자)	총저수량 (천톤)	관개면적 (ha)	제당높이 (m)	제당길이 (m)		
원당저수지	용궁면 무이리	예천군 (농촌활력과)	22.7	11.7	5.5	95	정비사업 완료로 재해위험요인 해소	

예천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예천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군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예천군 조례·규칙 등 공포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0월 26일

예 천 군 수

1. 조례명 : 예천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이유

- 적극적인 인구·청년정책 추진과 공공건축물의 원활한 건립 등 주요 현안사업 추진을 위해 기구를 개편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기구 개편(안 제3조)

- 2실 1담당관 15과 2직속기관 3사업소 158팀 → 2실 16과 2직속기관 3사업소 162팀
 - 부서명칭변경 : 홍보소통담당관 → 홍보소통과
새마을경제과 → 지역경제과
 - 팀 신설 : 기획예산실 인구청년정책팀, 행정지원실 중대재해예방팀, 건축과 공공건축팀, 농업기술센터 과수기술팀

4. 개정조례안

- 붙임과 같음

5. 의견제출

- 이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11월 1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예천군수 (참조: 행정지원실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정(안)	수 정(안)	수정사유

나. 성명(기관 또는 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연락처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방문 제출

1) 전자우편(이메일) kurs29@korea.kr

2) 주소 : 경북 예천군 예천읍 충효로 111, 예천군청 행정지원실

3) 팩스 : 054-650-6089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예천군청 행정지원실(전화: 054-650-6836)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와 관련된 사항은 예천군 홈페이지 (www.ycg.kr) 『열린군정-군정소식-입법예고』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조례명 : 예천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연 락 처 :

정(안)	수 정(안)	수정사유

예천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천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 제목 “(실장·과장·담당관의 직급 등)”을 “(실장·과장의 직급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실장·과장·담당관”을 “실장·과장”으로 한다.

제3조의 제목 “(실·과·담당관의 설치)”를 “(실·과의 설치)”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홍보소통담당관, 재무과, 새마을경제과”를 “홍보소통과, 재무과, 지역경제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실·과·담당관”을 “실·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에 아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아. 청년 정책 및 지원에 관한 사항

제3조제2항제2호에 자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자. 중대재해예방 업무 총괄

제3조제2항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홍보소통담당관”을 “홍보소통과장”으로 하고, 같은 항 제5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새마을경제과장”을 “지역경제과장”으로 하며, 같은 항 제17호에 바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바. 공공건축물 건립에 관한 사항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3년 12월 3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조직개편에 따른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조직개편으로 인하여 변경되는 사무는 다른 조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사무를 이관받은 부서에서 처리한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예천군 청년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3항 중 “새마을경제과장”을 “지역경제과장”으로 한다.

② 예천군 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새마을경제과장”을 “지역경제과장”으로 한다.

③ 예천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의 실과소란 중 “새마을경제과”를 “지역경제과”로 한다.

④ 예천군민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중 “실·과장·담당관 및 소장”을 “실·과·소장”으로 한다.

⑤ 예천군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중 “실·과장 및 담당관”을 “실·과장”으로 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2조(실장·과장·담당관의 직급 등) ① 예천군(이하“군”이라 한다) 본청의 실장·과장·담당관의 직급과 사무분장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2조(실장·과장의 직급 등) ① ----- ----- 실장·과장----- ----- -----.
② (생략)	② (현행과 같음)
제3조(실·과·담당관의 설치) ① 군의 행정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기획예산실, 행정지원실, 홍보소통담당관, 재무과, 새마을경제과, 사회복지과, 주민행복과, 종합민원과, 문화관광과, 환경관리과, 농정과, 산림녹지과, 축산과, 건설교통과, 농촌활력과, 도시과, 건축과, 안전재난과를 둔다.	제3조(실·과의 설치) ① ----- ----- ----- 홍보소통과, 재무과, 지역경제과----- ----- ----- ----- ----- ----- -----.
② 실·과·담당관 분장 사무는 다음과 같다	② 실·과 ----- -----
1. 기획예산실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 -----.
가. ~ 사. (생략)	가. ~ 사. (현행과 같음)
<신설>	아. 청년 정책 및 지원에 관한 사항
2. 행정지원실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2. ----- -----.

가. ~ 아. (생 략) <신 설> 3. <u>홍보소통담당관</u>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가. ~ 바. (생 략) 4. (생 략) 5. <u>새마을경제과장</u>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가. ~ 사. (생 략) 6. ~ 16. (생 략) 17. 건축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가. ~ 마. (생 략) <신 설> 18. (생 략)	가. ~ 아. (현행과 같음) 자. <u>중대재해예방 업무 총괄</u> 3. <u>홍보소통과장</u>----- -----. 가. ~ 바. (현행과 같음) 4. (현행과 같음) 5. <u>지역경제과장</u>----- -----. 가. ~ 사. (현행과 같음) 6. ~ 16. (현행과 같음) 17. ----- -----. 가. ~ 마. (현행과 같음) 바. <u>공공건축물 건립에 관한 사항</u> 18. (현행과 같음)
--	--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 제13조(시·군·구의 기구설치기준) ① 시·군·구 본청의 실·국이나 과·담당관과 자치구가 아닌 구의 과·담당관의 설치에 관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되, 시·군·구 본청에 두는 실·국의 설치기준은 별표 3과 같다.
- ② 시·군·구 본청의 실장·국장과 과장·담당관의 직급과 실·과·담당관의 사무분장 등에 관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한다.
- ③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는 관할 시·군·구 조직간의 균형을 유지하기 위하여 기구의 설치·운영에 관한 지침을 작성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보할 수 있다.
- ④ 시장·군수·구청장은 실·국과 실·과·담당관의 명칭과 사무분장을 시·도와 시·군·구간 사무의 연계성과 그 기능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정하여야 한다.

예천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예천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을 전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군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예천군 조례·규칙 등 공포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0월 26일

예 천 군 수

1. 규칙명 : 예천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2. 개정 이유

- 적극적인 인구·청년정책 추진과 공공건축물의 원활한 건립 등 주요 현안사업 추진을 위해 기구를 개편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기구 개편(안 제4조~제6조, 제8조, 제20조)

- 2실 1담당관 15과 2직속기관 3사업소 158팀 → 2실 16과 2직속기관 3사업소 162팀
 - 부서명칭변경 : 홍보소통담당관 → 홍보소통과
새마을경제과 → 지역경제과
 - 팀 신설 : 기획예산실 인구청년정책팀, 행정지원실 중대재해예방팀, 건축과 공공건축팀, 농업기술센터 과수기술팀

4. 개정규칙안

- 붙임과 같음

5. 의견제출

- 이 개정 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11월 1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예천군수(참조: 행정지원실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정(안)	수 정(안)	수정사유

나. 성명(기관 또는 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연락처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방문 제출

- 1) 전자우편(이메일) kurs29@korea.kr
- 2) 주소 : 경북 예천군 예천읍 충효로 111, 예천군청 행정지원실
- 3) 팩스 : 054-650-6089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예천군청 행정지원실(전화: 054-650-6836)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와 관련된 사항은 예천군 홈페이지(www.ycg.kr) 『열린군정-군정소식-입법예고』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예천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예천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실장·과장·담당관”을 “실장·과장”으로 한다.

제2조 중 “실·과·담당관·소장”을 “실·과장”으로 한다.

제3조의 제목 “(실·과장·담당관의 직급)”을 “(실·과장의 직급)”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홍보소통담당관·재무과장·문화관광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새마을경제과장”을 “홍보소통과장·재무과장·문화관광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지역경제과장”으로 한다.

제4조제16호를 제18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16호 및 제17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6. 청년 정책 및 지원에 관한 사항

17. 외국인 정책 및 지원에 관한 사항

제5조제15호를 제16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1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5. 중대재해예방 업무 총괄

제6조의 제목 “(홍보소통담당관)”을 “(홍보소통과)”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홍보소통담당관”을 “홍보소통과장”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1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2. 공공데이터 및 데이터기반행정에 관한 사항

제7조에 제2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1. 고향사랑기부제에 관한 사항

제8조의 제목 “(새마을경제과)”를 “(지역경제과)”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새마을경제과장”을 “지역경제과장”으로 하며, 같은 조 제 9호를 삭제한다.

제20조제7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11호를 제14호로 하며, 같은 조에 제 11호부터 제13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1. 공공건축물 건립(도 투자심사 이상)

12. 공공건축물 건축협의(기술지도) 및 공사감독

13. 청사 건립(증축, 개축, 대수선 포함)

제24조제2항제8호부터 제11호까지를 각각 제9호부터 제12호까지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3년 12월 3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조직개편에 따른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조직개편으로 인하여 변경되는 사무는 다른 규칙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사무를 이관받은 부서에서 처리한다.

제3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예천군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

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 본문 및 같은 항 제2호 중 “실·과장 및 담당관”을 “실·과장”으로 한다.

[별표 1]의 본청란 중 분임징수관, 분임재무관, 채권관리관 및 부채관리관의 “실·과장 및 담당관”을 “실·과장”으로 한다.

② 예천군 지방공무원 근무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실·과·담당관, 직속기관”을 “실·과, 직속기관”으로 한다.

③ 예천군 사무인계인수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4호 서식]의 사무분장표 중 “소속실과단(담당)”을 “소속부서(팀)”으로 하고, “실과단, 및 담당별 사무분장은 직제규칙과 담당관 및 실과단규칙과 같음”을 “소속부서, 팀별 사무분장은 직제규정과 같음”으로 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예천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2조에 따라 예천군 본청의 <u>실장 · 과장 · 담당관</u> , 직속기관의 장, 사업소의 장 및 하부 행정기관의 장의 직급과 사무분장 등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 ----- <u>실장 · 과장</u> ----- ----- ----- ----- ----- -----.
제2조(직무) <u>실 · 과 · 담당관 · 소</u> 장은 부군수를 보좌하고 소속직원을 지휘 · 감독한다.	제2조(직무) <u>실 · 과장</u> ----- ----- -----.
제3조(<u>실 · 과장 · 담당관의 직급</u>) 기획예산실장 · 행정지원실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행정사무관으로 보하고, <u>홍보소통담당관 · 재무과장 · 문화관광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새마을경제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공업사무관으로, 사회복지과장 · 주민행복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사회복지사무관으로, 종합민원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보건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u>	제3조(<u>실 · 과장의 직급</u>) ----- ----- ----- ----- <u>홍보소통과장 · 재무과장 · 문화관광과장은 지</u> <u>방행정사무관으로, 지역경제과</u> <u>장</u> ----- ----- ----- ----- ----- ----- ----- -----

환경관리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공업사무관 또는 지방환경사무관으로, 농정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농업사무관으로, 산림녹지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농업사무관 또는 지방녹지사무관으로, 축산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농업사무관 또는 지방수의사무관으로, 건설교통과장 · 농촌활력과장 · 도시과장 · 안전재난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건축과장은 지방시설사무관으로 보한다.

제4조(기획예산실) 기획예산실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 15. (생략)

<신 설>

<신 설>

16. (생략)

제5조(행정지원실) 행정지원실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illegible]

제4조(기획예산실) -----

--.

1. ~ 15. (현행과 같음)

16. 청년 정책 및 지원에 관한 사항

17. 외국인 지원 업무

18. (현행 제16호와 같음)

제5조(행정지원실) -----

--.

1. ~ 14. (생략)

<신설>

15. (생략)

제6조(홍보소통담당관) 홍보소통
담당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 11. (생략)

제7조(재무과) 재무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 20. (생략)

<신설>

제8조(새마을경제과) 새마을경제
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
장한다.

1. ~ 8. (생략)

9. 청년 정책 및 지원에 관한 사
항

10. ~ 17. (생략)

제20조(건축과) 건축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 6. (생략)

7. 공공건축물 건축협의

8. ~ 10. (생략)

<신설>

1. ~ 14. (현행과 같음)

15. 중대재해예방 업무 총괄

16. (현행 제15호와 같음)

제6조(홍보소통과) 홍보소통과장

-----.

1. ~ 11. (현행과 같음)

제7조(재무과) -----
-----.

1. ~ 20. (현행과 같음)

21. 고향사랑기부제에 관한 사
항

제8조(지역경제과) 지역경제과장

-----.

1. ~ 8. (현행과 같음)

<삭제>

10. ~ 17. (현행과 같음)

제20조(건축과) -----
-----.

1. ~ 6. (현행과 같음)

<삭제>

8. ~ 10. (현행과 같음)

11. 공공건축물 건립(도 투자심
사 이상)

<u><신 설></u> <u><신 설></u> <u>11.</u> (생 략) 제24조(과의 사무분장) ① (생 략) ② 건강증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 8. (생 략) <u>8.</u> ~ <u>11.</u> (생 략)	<u>12.</u> 공공건축물 건축협의를(기술 지도) 및 공사감독 <u>13.</u> 청사 건립(증축, 개축, 대수 선 포함) <u>14.</u> (현행 제11호와 같음) 제24조(과의 사무분장) ① (현행 과 같음) ② ----- -----. 1. ~ 8. (현행과 같음) <u>9.</u> ~ <u>12.</u> (현행 제8호부터 제11호까지와 같음)
---	---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 제13조(시·군·구의 기구설치기준) ① 시·군·구 본청의 실·국이
나 과·담당관과 자치구가 아닌 구의 과·담당관의 설치에 관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되, 시·군·구 본청에 두는 실·
국의 설치기준은 별표 3과 같다.
- ② 시·군·구 본청의 실장·국장과 과장·담당관의 직급과 실·과·
담당관의 사무분장 등에 관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한다.
- ③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는 관할 시·군·구 조직간의 균형을
유지하기 위하여 기구의 설치·운영에 관한 지침을 작성하여 시장·
군수·구청장에게 통보할 수 있다.
- ④ 시장·군수·구청장은 실·국과 실·과·담당관의 명칭과 사무분
장을 시·도와 시·군·구간 사무의 연계성과 그 기능을 고려하여 합
리적으로 정하여야 한다.

예천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예천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군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예천군 조례·규칙 등 공포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0월 26일

예 천 군 수

1. 조례명 : 예천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이유

- 주요 현안사업 추진을 위해 정원을 재배치하고, 원활한 의정활동 지원을 위해 의회 정책지원관 인력을 반영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정원 총수 : 769명 → 771명 / 중 2명(안 제2조)

- 집행기관의 정원 : 755명(변동 없음)
- 의회사무기구의 정원 : 14명 → 16명

나. 정원관리 기관별 정원 조정(안 별표 3)

구 분	계	본청	의회	직속기관	사업소	읍면	비고
현 행	769	380	14	112	42	221	
개정안	771	388	16	112	39	216	
증 감	+2	+8	+2	-	-3	-5	

다. 직종 및 직급별 정원 조정 - 정무직 · 일반직(안 별표 3)

구 분	계	정무직	4급	4·5급	5급	6급	7급	8급	9급	전문 경력관
현 행	726	1	2	3	35	178	207	178	119	3
개정안	727	1	2	3	35	178	209	180	116	3
증 감	+1	-	-	-	-	-	+2	+2	-3	-

라. 직종 및 직급별 정원 조정 - 연구직 · 지도직(안 별표 3)

구 분	계	연구직		지도직	
		연구관	연구사	지도관	지도사
현 행	43	-	8	3	32
개정안	44	-	9	3	32
증 감	+1	-	+1	-	-

4. 개정조례안

○ 불임과 같음

5. 의견제출

- 이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11월 1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예천군수(참조: 행정지원실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정(안)	수 정(안)	수정사유

나. 성명(기관 또는 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연락처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방문 제출

1) 전자우편(이메일) kurs29@korea.kr

2) 주소 : 경북 예천군 예천읍 충효로 111, 예천군청 행정지원실

3) 팩스 : 054-650-6089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예천군청 행정지원실(전화: 054-650-6836)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와 관련된 사항은 예천군 홈페이지
(www.ycg.kr) 『열린군정-군정소식-입법예고』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조례명 : 예천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연 락 처 :

정(안)	수 정(안)	수정사유

예천군 조례 제 호

예천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천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769명”을 “771명”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14명”을 “16명”으로 한다.

별표 3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2023년 12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3]

예천군 정원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표(제4조 관련)

구분	총계	본청	의회	직속 기관	사업소	읍 면
총계	771	388	16	112	39	216
정무직 계	1	1	—	—	—	—
군수	1	1	—	—	—	—
일반직 계	726	382	16	78	34	216
4급	2	1	—	1	—	—
4급 내지 5급	3	2	—	—	—	1
5급, 5급 내지 연구관	35	16	3	2	3	11
6급 이하	683	361	13	74	31	204
전문경력관 나군(농기계교육교관)	1	—	—	1	—	—
전문경력관 다군(사진·영상촬영)	2	2	—	—	—	—
별정직 계	—	—	—	—	—	—
6급 상당 이하	—	—	—	—	—	—
연구직 계	9	5	—	—	4	—
연구사	9	5	—	—	4	—
지도직 계	35	—	—	34	1	—
지도관	3	—	—	3	—	—
지도사	32	—	—	31	1	—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원의 총수) 예천군에 두 는 지방공무원 정원(이하 “정 원”이라 한다)의 총수는 <u>769명</u> 으로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 다.	제2조(정원의 총수) ----- ----- ----- <u>771명</u> ----- -----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의회사무기구의 정원 : <u>14명</u>	2. ----- <u>16명</u>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0조(정원의 규정) ①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1. 집행기관의 정원(제3호에 따른 공무원의 정원은 제외한다)
2. 삭제 <2020. 3. 10.>
3. 지방공립대학에 두는 교육공무원의 정원
4. 의회사무기구의 정원
5. 합의회행정기관의 정원

②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지방전문경력관 규정」 제2조에 따른 지방전문경력관(이하 “지방전문경력관”이라 한다)의 정원을 포함한다]은 제1항에 따른 정원의 총수 범위에서 제22조제2항에 따른 정원관리기관별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다만, 시·도의 5급 이하(시·군·구는 6급 이하) 직급별 정원과 지방전문경력관의 정원은 조례로 그 총수만 정하고 그 범위에서 제22조제2항에 따른 정원의 관리기관별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한다.

③ 지방공무원의 직렬별 정원(지방전문경력관의 경우에는 「지방전문경력관 규정」 제4조제1항에 따른 직위군별 정원을 말한다)은 제1항에 따른 정원의 총수 범위에서 제22조제2항에 따른 정원관리기관별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3. 12. 4.>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은 제2항에 따른 정원의 범위에서 공무원을 임용하거나 임용제청하여야 한다. 다만, 상위직급에 결원이 있을 경우에는 그 결원의 범위에서 동일 직렬의 직근 하위직급을 임용하거나 임용제청할 수 있다. <개정 2021. 12. 16.>

⑤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겸임의 경우에는 제4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예천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I. 비용추계 요약

1. 재정수반요인

- 「예천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 개정에 따른 인건비 지급에 필요한 비용
- ※ 정원조정 내역 : 769명 ⇨ 771명

구 분	계	정무직	4급	4·5급	5급	6급	7급	8급	9급	전문 경력관
현 행	726	1	2	3	35	178	207	178	119	3
개정안	727	1	2	3	35	178	209	180	116	3
증 감	+1	-	-	-	-	-	+2	+2	-3	-

구 분	계	연구직		지도직	
		연구관	연구사	지도관	지도사
현 행	43	-	8	3	32
개정안	44	-	9	3	32
증 감	+1	-	+1	-	-

2. 비용추계의 전제

- 인건비 상승으로 인해 기준인건비를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함.

3. 비용추계의 결과

- 2024년부터 2028년까지 약 528백만원 재정지출 예상

구 분	1차 년도	2차 년도	3차 년도	4차 년도	5차 년도	합계
세 입 (백만원)	-	-	-	-	-	-
세 출 (백만원)	102	104	106	107	109	528
총비용 (백만원)	102	104	106	107	109	528

※ 최근 5년간(2019~2023) 공무원 평균보수인상률 1.72%적용

4. 재원조달 방안

(단위 : 백만원)

구 분		1차 년도	2차 년도	3차 년도	4차 년도	5차 년도	합계
국 비		-	-	-	-	-	-
도비	일반회계	-	-	-	-	-	-
	특별회계	-	-	-	-	-	-
	기 금	-	-	-	-	-	-
군 비		102	104	106	107	109	528
민 간		-	-	-	-	-	-
기 타		-	-	-	-	-	-
합 계		102	104	106	107	109	528

5. 부대의견 : 없음

6. 작 성 자 : 행정지원실 지방행정사무관 박태환(054-650-6080)

II. 비용추계의 상세내역

○ 정원증원에 따른 소요경비 : 101,196천원/연간

구 분	산출내역 (월소요액 × 12월 × 인원)	연간 총인건비 (천원)	비고
합 계		101,96	
7급 +2명	3,188천원 x 12월 x 2명 (7급 기본급 평균 2,868천원 / 각종수당 320천원)	76,512	
8급 +2명	2,426천원 x 12월 x 2명 (8급 기본급 평균 2,111천원 / 각종수당 315천원)	58,224	
9급 △3명	2,181천원 x 12월 x △3명 (9급 기본급 평균 1,866천원 / 각종수당 315천원)	△78,516	
연구사 +1명	3,748천원 x 12월 x 1명 (연구사 기본급 평균 3,423천원 / 각종수당 325천원)	44,976	

※ 2023년 9월까지 인건비 지급현황을 기준으로 비용 산출

예천군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예천군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군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 절차법 제41조 및 예천군 조례·규칙 등 공포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0월 26일

예 천 군 수

1. 규칙명 : 예천군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2. 개정이유

- 급변하는 행정수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주요 현안 사업 추진 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기구 개편을 추진하고 그에 따른 인력을 반영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정원 총수 : 769명 → 771명 / 증 2명(안 별표)

- 집행기관의 정원 : 755명(변동 없음)

- 의회사무기구의 정원 : 14명 → 16명

나. 정원관리 기관별 정원 조정(안 별표)

구 분	계	본청	의회	직속기관	사업소	읍면	비고
현 행	769	380	14	112	42	221	
개정안	771	388	16	112	39	216	
증 감	+2	+8	+2	-	-3	-5	

다. 직종 및 직급별 정원 조정 - 정무직 · 일반직(안 별표)

구 분	계	정무직	4급	4·5급	5급	6급	7급	8급	9급	전문 경력관
현 행	726	1	2	3	35	178	207	178	119	3
개정안	727	1	2	3	35	178	209	180	116	3
증 감	+1	-	-	-	-	-	+2	+2	-3	-

라. 직종 및 직급별 정원 조정 - 연구직 · 지도직(안 별표)

구 분	계	연구직		지도직	
		연구관	연구사	지도관	지도사
현 행	43	-	8	3	32
개정안	44	-	9	3	32
증 감	+1	-	+1	-	-

4. 개정규칙안

- 붙임과 같음

5. 의견제출

- 이 개정 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11월 1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예천군수(참조: 행정지원실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 · 반 여부와 그 사유)

정(안)	수 정(안)	수정사유

나. 성명(기관 또는 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연락처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방문 제출

1) 전자우편(이메일) kurs29@korea.kr

2) 주소 : 경북 예천군 예천읍 충효로 111, 예천군청 행정지원실

3) 팩스 : 054-650-6089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예천군청 행정지원실(전화: 054-650-6836)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와 관련된 사항은 예천군 홈페이지
(www.ycg.kr) 『열린군정-군정소식-입법예고』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규칙명 : 예천군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연 락 처 :

정(안)	수 정(안)	수정사유

예천군 규칙 제 호

예천군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예천군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별표1”을 “별표”로 한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2023년 12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예천군 직렬별 지방공무원 정원표(제2조 관련)

구 분		총계	본청	의회	직속기관	사업소	읍면
총 계		771	388	16	112	39	216
정무직 계		1	1	0	0	0	0
	정무직	1	1	0	0	0	0
일반직 계		726	382	16	78	34	216
일반직	4급 소계	2	1	0	1	0	0
	4급	1	1	0	0	0	0
	기술4급	1	0	0	1	0	0
	4급 내지 5급 소계	3	2	0	0	0	1
	4급 내지 행정5급	2	2	0	0	0	0
	4급·기술4급 내지 행정5급·농업5급	1	0	0	0	0	1
	5급 소계	35	16	3	2	3	11
	행정	4	3	1	0	0	0
	시설	1	1	0	0	0	0
	행정·사회복지	2	2	0	0	0	0
	행정·공업	1	1	0	0	0	0
	행정·농업	3	1	0	0	0	2
	행정·시설	5	4	0	0	1	0
	행정·농업연구관	1	0	0	0	1	0
	행정·사회복지·농업	2	0	0	0	0	2
	행정·사회복지·시설	1	0	0	0	0	1
	행정·농업·녹지	2	1	0	0	0	1
	행정·농업·시설	4	0	2	0	0	2
	행정·농업·수의	1	1	0	0	0	0
	행정·공업·환경	1	1	0	0	0	0
	행정·보건·시설	1	1	0	0	0	0
	행정·시설·방송통신	1	0	0	0	1	0
	행정·농업·녹지·수의	1	0	0	0	0	1
	행정·농업·보건·시설	1	0	0	0	0	1
	행정·농업·환경·시설	1	0	0	0	0	1
	행정·보건·의료기술·간호	1	0	0	1	0	0
	보건·의료기술·간호·보건진료	1	0	0	1	0	0
	6급 소계	178	100	2	14	9	53
	행정	29	23	2	0	4	0
	세무	2	2	0	0	0	0
	사회복지	3	2	0	0	0	1
	농업	3	3	0	0	0	0
	녹지	2	2	0	0	0	0
	보건진료	5	0	0	5	0	0
	환경	3	3	0	0	0	0
	시설	15	12	0	0	1	2
	운전	2	2	0	0	0	0
	행정·세무	3	2	0	0	0	1
	행정·전산	2	2	0	0	0	0
	행정·사회복지	7	6	0	0	0	1
	행정·공업	2	2	0	0	0	0
	행정·농업	5	3	0	0	0	2

		행정·보건	2	1	0	1	0	0
		행정·환경	1	1	0	0	0	0
		행정·시설	10	9	0	0	0	1
		행정·위생	2	1	0	0	1	0
		행정·운전	1	1	0	0	0	0
		행정·학예연구사	1	1	0	0	0	0
		전산·방송통신	1	1	0	0	0	0
		공업·시설	1	1	0	0	0	0
		농업·녹지	1	1	0	0	0	0
		농업·수의	2	2	0	0	0	0
		보건·간호	2	0	0	2	0	0
		공업·환경	2	2	0	0	0	0
		행정·세무·사회복지	2	0	0	0	0	2
		행정·세무·농업	21	1	0	0	0	20
		행정·세무·시설	1	1	0	0	0	0
		행정·전산·방송통신	2	2	0	0	0	0
		행정·사회복지·농업	4	0	0	0	0	4
		행정·사회복지·보건	2	2	0	0	0	0
		행정·공업·환경	1	1	0	0	0	0
		행정·공업·방송통신	2	1	0	0	1	0
		행정·농업·녹지	3	1	0	0	0	2
		행정·농업·수의	2	0	0	0	0	2
		행정·농업·시설	8	1	0	0	0	7
		행정·녹지·시설	1	1	0	0	0	0
		행정·보건·간호	1	0	0	1	0	0
		전산·방송통신·사무운영	1	1	0	0	0	0
		보건·간호·의료기술	5	0	0	5	0	0
		행정·세무·사회복지·농업	3	0	0	0	0	3
		행정·세무·농업·환경	1	0	0	0	0	1
		행정·사회복지·농업·보건	1	0	0	0	0	1
		행정·사회복지·농업·간호	2	0	0	0	0	2
		공업·기계운영·전기운영	1	1	0	0	0	0
		방호·위생·시설관리·사무운영	1	0	0	0	1	0
		방호·운전·시설관리·사무운영	2	1	0	0	0	1
		운전·기계운영·전기운영·사무운영	1	0	0	0	1	0
		기계운영·전기운영	1	1	0	0	0	0
	7급 소개		209	121	5	22	13	48
		행정	45	32	5	0	5	3
		세무	4	4	0	0	0	0
		전산	2	2	0	0	0	0
		사회복지	8	2	0	0	0	6
		공업	2	1	0	0	1	0
		농업	3	3	0	0	0	0
		녹지	1	1	0	0	0	0
		보건	1	1	0	0	0	0
		의료기술	1	0	0	1	0	0
		보건진료	4	0	0	4	0	0
		환경	1	1	0	0	0	0
		시설	22	18	0	0	3	1
		운전	4	4	0	0	0	0
		시설관리	1	0	0	0	1	0
		행정·세무	7	4	0	0	0	3
		행정·전산	1	1	0	0	0	0

		행정·사회복지	16	5	0	0	0	11
		행정·공업	1	1	0	0	0	0
		행정·농업	11	9	0	0	0	2
		행정·녹지	1	1	0	0	0	0
		행정·시설	16	16	0	0	0	0
		행정·방재안전	1	1	0	0	0	0
		행정·위생	3	2	0	0	1	0
		전산·방송통신	2	2	0	0	0	0
		공업·환경	2	2	0	0	0	0
		공업·방송통신	1	1	0	0	0	0
		농업·녹지	2	2	0	0	0	0
		농업·수의	1	1	0	0	0	0
		보건·의료기술	2	1	0	1	0	0
		보건·간호	11	0	0	11	0	0
		간호·보건진료	2	0	0	2	0	0
		환경·시설	1	0	0	0	1	0
		기계운영·전기운영	1	0	0	0	1	0
		행정·세무·농업	19	0	0	0	0	19
		행정·농업·녹지	2	1	0	0	0	1
		행정·농업·수의	2	0	0	0	0	2
		행정·농업·시설	1	1	0	0	0	0
		보건·간호·의료기술	1	0	0	1	0	0
		환경·운전·전기운영	1	1	0	0	0	0
		행정·보건·간호·의료기술	1	0	0	1	0	0
		행정·보건·간호·보건진료	1	0	0	1	0	0
	8급	소계	180	87	4	26	7	56
		행정	34	27	2	0	2	3
		세무	1	1	0	0	0	0
		사회복지	10	7	0	0	0	3
		공업	3	1	0	0	2	0
		농업	2	2	0	0	0	0
		녹지	1	1	0	0	0	0
		보건	4	1	0	3	0	0
		간호	12	0	0	0	0	12
		보건진료	3	0	0	3	0	0
		환경	2	2	0	0	0	0
		시설	22	12	0	0	2	8
		방송통신	1	0	1	0	0	0
		운전	4	3	1	0	0	0
		기계운영	1	1	0	0	0	0
		행정·세무	6	1	0	0	0	5
		행정·전산	1	1	0	0	0	0
		행정·사회복지	9	3	0	0	0	6
		행정·공업	1	1	0	0	0	0
		행정·농업	21	5	0	0	0	16
		행정·녹지	1	1	0	0	0	0
		행정·환경	1	1	0	0	0	0
		행정·시설	8	5	0	0	1	2
		행정·방재안전	2	2	0	0	0	0
		전산·방송통신	1	1	0	0	0	0
		공업·시설	2	2	0	0	0	0
		농업·녹지	3	3	0	0	0	0
		보건·간호	7	0	0	7	0	0

		보건·환경	1	1	0	0	0	0
		간호·보건진료	1	0	0	1	0	0
		기계운영·화공운영	1	1	0	0	0	0
		행정·농업·환경	1	0	0	0	0	1
		행정·환경·운전	1	1	0	0	0	0
		의료기술·간호	7	0	0	7	0	0
		보건·간호·의료기술	3	0	0	3	0	0
		행정·보건·간호·보건진료	2	0	0	2	0	0
	9급 소계		116	53	2	12	2	47
	행정	28	12	2	0	2	12	
	사회복지	7	5	0	0	0	2	
	농업	8	4	0	0	0	4	
	보건	6	0	0	6	0	0	
	방호	1	1	0	0	0	0	
	환경	3	3	0	0	0	0	
	시설	8	3	0	0	0	5	
	방재안전	1	1	0	0	0	0	
	위생	1	0	0	1	0	0	
	운전	12	10	0	2	0	0	
	행정·세무	15	3	0	0	0	12	
	행정·사회복지	10	2	0	0	0	8	
	행정·농업	1	1	0	0	0	0	
	행정·보건	1	0	0	1	0	0	
	행정·환경	1	0	0	0	0	1	
	행정·시설	5	4	0	0	0	1	
	전산·방송통신	1	1	0	0	0	0	
	녹지·시설	2	2	0	0	0	0	
	보건·사회복지	1	0	0	1	0	0	
	보건·의료기술	1	0	0	1	0	0	
	행정·세무·환경	2	0	0	0	0	2	
	행정·전산·방송통신	1	1	0	0	0	0	
	전문경력관 소계		3	2	0	1	0	0
	전문경력관 나군(농기계 교육교관)	1	0	0	1	0	0	
	전문경력관 다군(사진·영상촬영)	2	2	0	0	0	0	
별정직	계	0	0	0	0	0	0	
	6급 상당(비서)	0	0	0	0	0	0	
연구직	계	9	5	0	0	4	0	
	학예연구사	4	4	0	0	0	0	
	기록연구사	1	1	0	0	0	0	
	농업연구사	4	0	0	0	4	0	
지도직	계	35	0	0	34	1	0	
	농촌지도관	3	0	0	3	0	0	
	농촌지도사	32	0	0	31	1	0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0조(정원의 규정) ①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1. 집행기관의 정원(제3호에 따른 공무원의 정원은 제외한다)
2. 삭제
3. 지방공립대학에 두는 교육공무원의 정원
4. 의회사무기구의 정원
5. 합의회행정기관의 정원

②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지방전문경력관 규정」 제2조에 따른 지방전문경력관(이하 "지방전문경력관"이라 한다)의 정원을 포함한다]은 제1항에 따른 정원의 총수 범위에서 제22조제2항에 따른 정원관리기관별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다만, 시·도의 5급 이하(시·군·구는 6급 이하) 직급별 정원과 지방전문경력관의 정원은 조례로 그 총수만 정하고 그 범위에서 제22조제2항에 따른 정원의 관리기관별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한다.

③ 지방공무원의 직렬별 정원(지방전문경력관의 경우에는 「지방전문경력관 규정」 제4조제1항에 따른 직위군별 정원을 말한다)은 제1항에 따른 정원의 총수 범위에서 제22조제2항에 따른 정원관리기관별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한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정원의 범위에서 공무원을 임용하거나 임용제청하여야 한다. 다만, 상위직급에 결원이 있을 경우에는 그 결원의 범위에서 동일 직렬의 직근 하위직급을 임용하거나 임용제청할 수 있다.

⑤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겸임의 경우에는 제4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